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64 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한병도·정태호·임오경

한정애 • 윤준병 • 정진욱

신정훈 • 윤건영 • 임호선

정동영·장철민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 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·교육, 의료, 주거· 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,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·활용 등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 참고로, 2023년 12월에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·보수뿐만 아 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빈집을 해체하려 는 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,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시장·군수 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중 "보수"를 "보수·철거"로 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농어촌 빈집 활용 등에 대한 특례)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숙박업자"라 한다)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 다.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숙박업자를 지도·감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숙박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있다.
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숙박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

- 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
- 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
- ⑤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0호바목의 생활환경정비사업(시행자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장·군수·구청장, 같은 항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공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)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24조(주거·교통기반의 확충) 제24조(주거·교통기반의 확충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 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 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·<u>보수</u> 등에 필요 -----보수·철거-----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~ ⑥ (생 략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7조의2(농어촌 빈집 활용 등 <신 설> 에 대한 특례) ① 인구감소지 역에 소재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사 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(이 하 이 조에서 "숙박업자"라 한 다)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 를 하여야 한다. 신고내용을 변 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숙박 업자를 지도·감독할 수 있으 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숙박 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숙박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
- 3.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<u>경우</u>
- 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성매매알선

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

⑤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 이호바목의 생활환경정비사업 (시행자가 같은 법 제56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리장・군수・구청장, 같은 항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공기업 인 경우에 한정한다)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「건축물관리 법」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 고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 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.